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2.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